

■ 유전의학융합학술지(JIG) 편집위원회 운영 세칙(v.2)

일시: 2019년 1월 31일(v.1), 2023년 6월 23일(v.2)

작성: 편집위원회

승인: 유전의학융합회

제1조 (학술지 발간 횟수 및 발행일)

유전의학융합학술지(Journal of Interdisciplinary Genomics; J Int Gen; JIG, 이하 '학술지'라 칭함)는 연 2회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 발행한다. 단, 발간 횟수는 학회 예산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의 의결 후 학회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논문 접수)

1. 논문의 종류는 원저(original article), 증례(brief report),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종설(review article), 독자투고(letters to the editor), 심포지엄 회보(symposium proceedings) 등이며, 증례는 국내에서 3회 이상 보고되지 않은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다.

2. 논문접수는 계정을 가진 자가 수시로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시에는 저작권 이양에 대해 동의하고 저자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사이트: <https://acoms.kisti.re.kr/journal/intro.do?page=logo&journalSeq=J000161>

3. 모든 논문은 학술지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학술지 투고규정은 온라인투고사이트에 Author guide로 게시한다.

4. 계정은 누구든 만들 수 있으나 필수입력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제3조 (논문 심사 및 편집 절차)

1. 접수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저자정보가 포함된 투고논문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후 저자관련내용을 삭제한 심사용파일을 만들어 재업로드한다.**

② 형식 및 분야를 검토하여 적절한 담당 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진행을 의뢰한다.

③ 형식에 문제가 있으면 투고자에게 접수 후 1주일이내로 수정 후 재접수를 이메일로 요청한다.

2. 의뢰 받은 편집위원(이하 담당 편집위원이라 칭함)은 1차로 점검한 후 **최소 2명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1주일 이내**에 1차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만일 이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할 수 없거나 기타 심사불가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 후 **2주 이내**에 책임저자에게 논문의 게재 승인, 게재 불가 또는 수정

보완 등을 e-mail과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수정보완을 통보받은 책임저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본을 온라인시스템에 재접수하거나 게재취소(withdrawal)를 하도록 한다.

4. 필요한 경우 편집 방침에 따라 논문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편집위원이 자구와 체제를 수정할 수 있다.
5. 논문의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게재불가 판정을 내려 저자에게 통보한다.
 - ① 심사에 참여한 3명(해당편집위원과 심사위원 2명) 중 2명 이상이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
 - ② 저자수정의뢰 후 6개월 내에 수정본이 재접수 되지 않은 경우
 - ③ 연구출판윤리가 심각히 훼손된 경우
6. 논문의 공식적 게재 승인 및 게재 순서 결정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편집위원장은 저자에게 이 메일로 게재사실을 전송한다.
7. 게재가 승인되고 영문교정 과정을 마친 논문은 출판사에서 최종적으로 출판에 앞서 책임저자에게 교정쇄 확인을 의뢰한다. 교정쇄는 PDF 파일의 형태로 책임저자에게 e-mail로 발송되며, 책임저자는 최종 교정을 실시하여 e-mail 또는 FAX로 48시간 이내에 회신한다.
8. 원고투고 후 저자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저자 전원의 확인 이메일을 담당편집위원에게 보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이미 출판된 논문에서 발견된 오류는 편집위원장이 Erratum으로 게재한다.

제4조 (심사자 윤리 및 심사원칙)

1. 본 학술지에 투고된 모든 원고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peer review를 거친다. 심사자는 출판이 전에 원고내용을 누출시키면 안되고 저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된다. 원고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즉시 담당 편집위원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를 거부해야 한다.
2. 심사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한다
 - ① 연구의 중요성 및 독창성
 - ② 연구계획, 방법, 통계분석의 적정성
 - ③ 결론 및 해석, 고찰의 논리적 타당성
 - ④ 용어 사용의 학문적 적절성
 - ⑤ 투고규정의 준수(분량, 표 및 그림 포함)

제5조 (연구 윤리 및 출판 윤리)

1.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에 출판되는 문헌들에 대하여 다음의 윤리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투고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① 해당 논문에 날조, 변조, 표절 등과 같은 연구 및 출판 윤리에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
- ② 인간과 관련된 모든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단체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논문에 기술하여야 한다.
- ③ 동물실험과 관련된 모든 연구는 관련 국내외 지침을 따라야 하며, 이를 논문에 기술하여야 한다.
- ④ 연구자는 연구에 영향을 끼친 재정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밝혀야 한다.
- ⑤ 다음과 같은 국내외 지침을 따른다.
 -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http://www.icmje.org/recommendations/>)
 -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s for Medical Journals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KAMJE; http://kamje.or.kr/intro.php?body=publishing_eth-ics)
 -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guidelines>)
 - The Ethical Principles for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outlined in the Declaration of Helsinki in 1975 (revised in 2013; <http://www.wma.net/en/30publications/10policies/b3/index.html>)
- ⑥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윤리위반에 대한 처리)

1. 연구 또는 출판윤리 위반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임시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적절한 수위의 임시결정을 내린 후, 이를 '연구출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최종결정을 요청한다.
 - ① 위반없음 확인
 - ② 연구윤리위반사항: 의심되는 경우는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 소속연구기관에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
 - ③ 출판윤리위반사항: 해당논문은 게재취소. 학술지에 이에 대한 공지. 단, 사실여부가 확인되어 징계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징계를 시행하기 전 연구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소명은 문서로 할 수 있으며 소명 이후 편집위원회는 결정을 반복할 지 결정한다.
 - ④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2. 편집위원회는 결정된 의결사항(임시결정사항)에 대하여 모든 증거자료를 포함하여 연구출판윤

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연구출판윤리위원회는 이를 검토하고 최종 결정한다.

3. 연구출판윤리위원회의 구성은 유전학융합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학회 상임이사 중 선임하여 5인이상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이 회의에 참석하되 위원회의 구성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처리한다.
4. 편집위원회 및 연구출판윤리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관련된 모든 자료와 함께 결정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부칙

1. 본 운영세칙의 개정 또는 폐지는 유전학융합회 정관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2. 본 규정 및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결정 사항은 학회의 정관을 준수해야 하며,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휘한다.
3. 본 운영세칙은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